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77
----------	-----

발의연월일 : '99. 6.
발의자 : 김성만 외 3명

1. 개정이유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감면대상 금액이 현실성이
없어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기 위함

2. 주요골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 금액이 “미화
2천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화 2천만달러이상”
으로 개정(안 제22조의2제1호나목)

3. 근거법규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의2제1호나목중 “미화 2천달러이상”을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감면) (생략)</p> <p>1. (생략)</p> <p> 가. (생략)</p> <p>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u>미화</u> <u>2천달러이상</u>으로 제조업 인 사업</p> <p> 다.~사. (생략)</p> <p>2.~3. (생략)</p>	<p>제22조의2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의 감면)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 가. (현행과 같음)</p> <p> 나. <u>미화</u> <u>2천만달러이상</u>..... </p> <p> 다.~사. (현행과 같음)</p> <p>2.~3. (현행과 같음)</p>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8
----------	-----

제출년월일 : 1998. 12. 11.

제출자 : 중구청장

1. 개정이유

- 공유재산에 대한 외국인 투자 촉진과 국민편익증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5836호를 1998. 7. 16개정 공포됨에 따라
-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의 대부료 및 매각대금 감면율과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공유재산의 대부 및 매각관련 사항을 상세하게 조례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총괄재산관리관은 지방재정법 제118조3의 규정에 의거 주민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재산증감 및 현황 작성시기를 명확히 규정 (안 제8조)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공장건설이 가능한 지역의 공유재산 전체를 외국인 투자유치 지역이 되도록 하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 투자촉진법을 준용하도록 함(안 제17조)
-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하여 고용창출효과와 원부자재의 국내조달, 수출비율이 높은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50% ~ 100%를 감면하고, 공유재산 매각대금의 25% ~ 100%를 감면함
- 벤처기업과 기술연구단지조성의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기업가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재산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대부료를 책정함(안 제21조)
- 천재·지변·재해시는 복구에 기여하기 위하여 잠종재산 매각대금을 20년이내 연4%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대부료 납부기간 유예와 연체이자 감면도 가능하도록 함(안 제20조, 27조)
- 농업진흥구역안의 농지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에 대하여 수의 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여 국민편익을 증진코자 함(안 제37조)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부동산과세시가표준액”을 “부동산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산의 증감 및 현황) 총괄재산관리관은 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88조제1항제10호, 제89조, 제90조제1항 제2호, 제91조제3항, 제92조의2, 제95조제2항제27호, 제96조제10항 및 제100조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1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3(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매각대상등)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산업단지·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 공장으로 설립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지방자치단체가 대규모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하여 개발·관리하는 외국인 투자지역내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내의 공유재산
6. 기타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공유재산

제18조를 삭제한다.

제20조제1항제3호중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를 “점유·사용자에게 매각하는 때”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전용 단지, 기술연구집단화단지 및 벤처기업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벤처기업전용단지의 개발사업시행자, 기술연구집단화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 또는 벤처기업의 집적시설의 설치자가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은 당해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되, 월할로 계산할 수 있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제7항 및 영 제9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장건설등을 목적으로 공유 재산을 임대·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임대료·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전액 감면을 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촉진법(이하 “외·투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있는 재정경제부장관 고시 고도기술 수반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이상의 사업
- 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고용창출 효과가 300명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
- 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 투자사업
- 마.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 바.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타지역에서 구지역내로 이전하는 사업
- 사. 가목 내지 마목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공업배치및공장 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75퍼센트를 감면하는 때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

- 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이상 2천만달러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나. 고용창출효과가 200명이상 300명미만으로 제조업인 사업
- 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사업
- 라. 수출지향형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이상 100퍼센트

의안심사보고서 (의안번호 177)

1. 의안명 : 울산광역시중구공유재산관리조례증개정조례안

2.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99. 6. 16
- 나. 발의자 :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김성만의원 외 3명
- 다. 위원회 회부 : '99. 6. 24
- 라. 위원회 상정 : '99. 6. 25

3.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성만의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에서 감면대상 금액이 현실성이 없어 대상금액을 상향조정하려는 것으로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전액 감면에서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러이상”으로 제조업인 사업을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4.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송원수)

본 조례 개정의 주요골자는
제22조의2제1항나목중 외국인 투자금액이 “미화 2천달러 이상” 으로를 “미화 2천만달러이상”으로 개정하려는 내용으로 개정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심사결과 : 원안가결